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1항 제3호에 마목에서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(단,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)
- 바.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
- 사.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
- 아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
- 자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및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
- 차.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
- 카. 「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」에 따라 한국환경산

업기술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환경정책자금 대출
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
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
파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
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
하.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
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대출
거.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
이용한 무역진흥자금 대출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[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. 이 경우 발행 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“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”라 한다)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]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(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) 비율(이하 “원화예대율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 자금대출(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가계자금 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. 다만,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

금 대출(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. : 100분의 100 이하

가. ~ 라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

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
대출(단, 한국은행으로부
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한
다)

바.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
영규정」에 따라 소상공인
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
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
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

사.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
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
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
흥개발기금 대출

아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벤처기

<신 설>

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
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
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

자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
및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
특별회계법」에 따라 한국
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
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
이용합리화자금 대출

<신 설>

차.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
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
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
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
자금 대출

<신 설>

카. 「환경개선특별회계 등
융자금 지원조건」에 따라
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
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
한 환경정책자금 대출

<신 설>

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
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
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
자금 대출

<신 설>

파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
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· 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</p>	<p><u>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</u> <u>하.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라 한국에</u> <u>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</u> <u>급배관건설 대출</u></p> <p><u>거.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</u> <u>입한 자금을 이용한 무역 진흥자금 대출</u>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